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KEB하나 재형저축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내용 : 조항명 변경, 행명 변경,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「KEB하나 재형저축」 특약(구 하나은행)	**「KEB하나 재형저축」 특약(구 하나은행)**	
제 1 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고 한다)과의 「KEB하나 재형저축」(이하 "이 예금"이라고 한다)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적립식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을 적용합니다.	**제 1 조 적용범위** 이 특약은 고객과 KEB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고 한다)과의 "KEB하나 재형저축(이하 "이 예금"이라고 한다)"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	조항명 변경 행명 변경 구행명 삭제
제 2 조 ~ 제 9조 (생략)	**제 2 조 ~ 제 9조** (좌동)	
제 10 조 제한사항 ① ~ ③ (생략)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.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1항*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	**제 10 조 제한사항** ① ~ ③ (좌동)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.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제21조 제1항*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	구행명 삭제
제 11 조 ~ 제 13 조 (생략)	**제 11 조 ~ 제 13 조** (생략)	